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

호산법률사무소 제공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에는 신체를 부당하게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 있으며, 이를 국민의 『기본권』이라 한다. 이는 곧 국가가 행사하는 제반 권력은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정도, 방법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당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공권력은 크게 입법권(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과 사법권(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행정권(정부에서 행하는 수많은 처분이나 조치가 그 예이다)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조정하고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이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

민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로써 우리나라 헌법상 마련되어 있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이다. 다시말해,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헌법재판소의 특징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원이 주로 일반법률을 적용하여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데 비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와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외에 법률의 위헌심사,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등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그 정당의 해산심판 및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다툼에 관한 심판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법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각각 3

인씩 추천하여 모두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헌법소원의 제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질서 수호의 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경우 그 침해당한 국민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헌법소원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면 특별할 요건이 필요하다.

가.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 또는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국가의 공권력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포함된다. 즉, 위헌적인 법률이나 위헌적인 행정처분, 위헌적인 사법작용(재판)등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닌 개별법률상 특별히 규정되고 있는 이익에 불과한 권리의 침해는 일반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것이지 헌법소원으로 하지는 못한다.

나. 헌법소원의 보충성 :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 해서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통상적인 사법적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조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과 고등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한 후에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달리 다를 방법이 없거나 또는 다른 수단이 있다하여도 그로 인해 구

제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헌법소원의 제소기간 : 헌법소원의 심판은 일정한 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소원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소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제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만은 기각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 헌법소원의 제소절차 :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절차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 선임서류 또는 국선변호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헌법소원의 남용방지제도 :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업무량 과다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공탁금납부명령제도와 사전심사제도(事前審査)를 두고 있다. 공탁금납부명령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사전심사제도는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그 대상, 청구기간, 청구방식 등에 하자가 없는지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에는 신체를 부당하게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 있으며, 이를 국민의 「기본권」이라 한다. 이는 곧 국가가 행사하는 제반 권력은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정도, 방법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당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3) 헌법소원의 심리절차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本案審理)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기관에게 송달하면 피청구기관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밖에도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도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직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書面審理)에 의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 변론을 열고,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의 효과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윽고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데, 이 때는 헌법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

정이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권력작용이 위헌이거나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결정으로 밝히는 것으로, 인용결정서의 주문(主文)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소원제기인과 피청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